

	<b>교원전공전환및소속학과 변경에관한규정</b>	규정번호	3-3-29
		제정일자	2016. 3. 1.
		개정일자	2026. 3. 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경민대학교(이하 “본 대학” 이라 한다.) 대학구조조정으로 인한 전임교원의 전공전환 및 소속 학과 변경에 따른 절차와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① 이 규정의 적용대상은 본 대학의 학과 신설·폐지·통합(융합) 및 교육과정의 변경 등에 따라 전공이 불일치되거나 학과 소속이 변경되는 전임교원으로 한다. 단, 퇴직 잔여기간이 5년 미만인 교원은 전공전환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총장은 교원운영정책, 학생정원조정 및 예산 등을 고려한 전공전환 및 소속 학과 변경이 필요할 때,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대상 교원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

제3조(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3.1.)

② 위원장은 교무학생처장으로 하고, 산학기획처장, 입학홍보처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 4인의 위원은 전임교원 중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한다. (개정 2019.8.1., 2026.3.1.)

③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제4조(전공전환 신청) ①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전공전환 교원으로 통보받은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전공전환 신청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총장은 전공전환 교원으로 통보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공전환 교육을 명할 수 있다.

제5조(전공전환 의견 조회) ① 교무학생처장은 제4조 제1항에 의거하여 제출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공전환 해당 학과에 송부하여 의견서 제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전공전환 의견서 제출을 의뢰받은 학과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전공전환 의견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 학과로의 전환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개정 2019.8.1.)

제6조(전공전환 대상자 선정) ① 교무학생처장은 학과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전공전환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자의 전공전환 필요성, 전공의 연계성, 업적평가 점수, 학과 운영실적 및 교원확보율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이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고려하여 전공전환 대상자를 확정하고, 교무학생처장은 그 결과를 대상자에게 통지한다. (개정 2019.8.1.)

제7조(전공전환 대상자 처우) ① 총장은 전공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공전환에 따른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며, 비용과 교육기간에 대하여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

② 전공전환 대상자의 책임시수는 총장이 따로 정하며, 본인이 희망할 경우 2년 이내로 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25.9.1.)

[제목개정 2025.9.1.]

제8조(전공전환교육 교원의 의무) ① 전공전환교육 교원은 교육기간 중 별지 제3호서식의 전공전환교육 보고서를 매학기 수업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전공전환교육 교원은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별지 제3호서식의 전공전환교육 보고서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전공전환 결과 보고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2025.9.1.)

③ 전공전환교육 교원이 교육기간 중 부득이한 사유로 당초 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교무학생처장에게 보고하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8.1.)

④ 전공전환 대상자로 선정된 교원은 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전공전환을 위해 타 대학 석사 또는 박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야 하고, 등록일로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전공의 석사학위를 취득하거나 박사학위를 수료하여야 한다. (신설 2025.9.1., 2026.3.1.)

제9조(교육지원비의 반환) 제7조에 의하여 지원된 비용은 특별한 사유 없이 본인의 원에 의하여 사직하거나 전공전환 교육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에는 지원받은 교육지원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10조(소속 학과 변경신청) ① 제2조 제2항에 의거하여 소속 학과 변경 적용대상 교원으로 통보 받은 자는 신청기간 내에 별지 제5호서식의 소속 학과 변경신청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총장은 소속 학과 변경 교원으로 통보받은 자가 제1항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2조 제2항에 해당되는 교원이 아니더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1조(소속 변경 의견조회) ① 교무학생처장은 제10조에 의거하여 제출받은 신청서를 신청기간 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교원의 소속 변경 희망학과에 송부하여 의견서 제출을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소속 변경 의견서 제출을 의뢰받은 학과는 송부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6호서식의 소속 학과 변경 의견서를 교무학생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설학과로의 소속 변경일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견을 따른다. (개정 2019.8.1.)

제12조(소속 변경 대상자 선정) ① 교무학생처장은 학과의 의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원회에 소속 변경 대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를 의뢰하여야 한다. (개정 2019.8.1.)

② 위원회는 심의 의뢰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속변경 평정표에 따라 심의하고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6.3.1.)

③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소속 변경 대상자를 확정한다.

제12조의2(소속 변경 심의 기준) ① 교원의 소속변경을 위한 위원회의 심의는 [별표]의 평정 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다.

1.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에 의한 평점이 70점 이상인 경우 : 소속 변경 승인
2.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에 의한 평점이 70점 미만인 경우 : 소속 변경 불허.

단, 통합 및 폐지 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 소속학과 변경을 불허하고 면직한다.

② 소속 변경 대상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학과별 적정 교원확보율의 범위 내에서 위원회의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교원 중에서 고득점 순위에 따라 선발한다. 다만, 해당학과가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 운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선발한다.

③ 위원회는 소속변경 희망학과와 적정 교원확보율 범위 내에서 별지 제7호서식의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에 의하여 평정을 종합적으로 심의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소속변경 희망학과 학과장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3.1.]

제12조의3(결과 통보 및 재심) ① 총장은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소속변경 대상자 및 탈락자를 확정하고 이를 해당 교원에게 서면으로 5일 이내에 통보한다.

② 소속 변경이 불허된 교원은 그 사실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총장은 재심을 요청받은 즉시 위원회에 재심을 요구하여야 하며, 재심을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재심 중에는 당해 교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6.3.1.]

제12조의4(직권면직) ① 통합 및 폐지 학과 교원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권면직 한다.

1. 소속 변경 미신청 교원
2. 소속 변경을 위한 전공전환교육기간 3년을 초과한 교원
3. 소속 변경 신청 교원 중 소속변경 신청이 불허된 교원
4. 당초 승인된 전공전환 계획과 다르게 임의로 교육기관이나 전공을 변경하여 이수하거나 교육을 중도에 포기한 교원

② 직권면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6.3.1.]

제13조(전공전환 교원의 소속 학과 변경) 총장은 제6조 제3항에 의하여 전공전환교원으로 확정된 자에 대하여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속 학과 변경을 명할 수 있다.

제14조(업무관장) 전공전환에 관한 모든 업무는 교무학생처에서 관장한다. (개정 2019.8.1.)

제15조(준용)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무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장이 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9.8.1.)

### 전공전환 신청서

신 청 인	소 속 학 과		직 위	
	최초 임용일		생 년 월 일	
	성 명			

학 력	- 학 사 : _____ 대학교 _____ (학) 전공 - 석 사 : _____ 대학원 _____ (학) 전공 - 박 사 : _____ 대학원 _____ (학) 전공
희 망 전 공 (복수 가능)	- 1순위 : _____ 대학원 _____ (학) (석사, 박사) (세부전공 : _____ /희망학과 : _____ ) - 2순위 : _____ 대학원 _____ (학) (석사, 박사) (세부전공 : _____ /희망학과 : _____ ) - 3순위 : _____ 대학원 _____ (학) (석사, 박사) (세부전공 : _____ /희망학과 : _____ )
전공전환기간	20 년 월 일부터 20 년 월 일까지 ( )년 ( )개월
예 상 경 비	
별 첨	[별지 제1-1호 서식] 전공전환 계획서] ※ 순위별 전공전환 계획서 작성

위와 같이 20 년 전공전환을 신청하며,  
해당기간동안 연구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학 과 장 : (인)  
 확인자 교무학생처장 : (인)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 전공전환 계획서

신 청 인	소 속	학 과 :	성 명	국문 (서명)
		직 위 :		영문
	임용일자	년 월 일	생년월일	년 월 일
현 전공 명				
신규 전공 명			개설예정 학기	학년도 학기
수료(이수) 과정명				
연구(연수)목적 (필요성)				
연구(연수)의 주요내용				
연수 후 활용 및 강좌관리 운용에 관한 전반적인 계획 제시				
기타 (전공전환 사유 기재)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6.3.1.)

### 전공전환 의견서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항목	학과 의견				비고(특이사항 기재)	
전공 일치도 (수업 가능성)						
학과 적합성						
종합 의견						

교원전공전환및소속학과변경에관한규정 제5조에 따라 전공전환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전체 소속교원이 합의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희망학과 교원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개정 2019.8.1.)

전공전환교육 보고서

작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수강중인 전 공	_____대학원 _____(학) 전공 (석사, 박사) (세부전공 : _____)					
전공전환 기 간	20 . . . ~ 20 . . .	현 학기	(1, 2, 3, 4, 5, 6)	취득 학점		
종합성과						
대상학기 수강과목	과목명	성 과			비 고	
	(학점 : )					
	(학점 : )					
	(학점 : )					
	(학점 : )					
	(학점 : )					

※ 매학기 수업종료일 이후 30일 이내에 교무학생처로 제출

※ 교육비 납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별도로 제출

[별지 제4호 서식] (개정 2025.9.1.)

### 전공전환 결과 보고서

작성 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
연구활용 및 교육운영계획						
	학과발전 기여계획					

※ 전공전환 교육기간 종료일까지 학위취득(예정)증명서, 전공전환교육보고서 [별지 제3호 서식] 와 함께 제출



[별지 제5-1호 서식]

### 소속변경 계획서

교 육 운영계획	
학과발전 기여계획	
기타사항	

[별지 제6호 서식] (개정 2026.3.1.)

### 소속 학과 변경 의견서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항목	학과 의견		비고(특이사항 기재)
전공 일치도 (수업 가능성)			
학과 적합성			
종합 의견			

교원전공전환및소속학과변경에관한규정 제11조에 따라 소속변경을 신청한 교원에 대한 의견을 전체 소속교원이 합의하여 제출합니다.

년 월 일

희망학과 교원 :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인 또는 서명)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신설 2026.3.1.)

**교원 소속변경 심의 평정표**

신청인	소속		직위		성명	
심사 기준			배점	점수	비고	
1. 위원회의 학과의견서 평정			30			
2. 전공의 일치도			20			
3. 강의평가 결과			20			
4. 교원업적평가 결과			10			
5. 종합평가			20			
합계			100			

년 월 일

교원소속변경심의위원회 위원장 : (인 또는 서명)  
 위원 : (인 또는 서명)  
 위원 : (인 또는 서명)  
 위원 : (인 또는 서명)  
 위원 : (인 또는 서명)  
 위원 : (인 또는 서명)  
 위원 : (인 또는 서명)

경민대학교 총장 귀하

[별표] (신설 2026.3.1.)

## 평정 기준

### 1. 학과 의견서

: 위원회는 학과에서 제출한 학과 의견서를 평정하여 점수를 산정한다.

### 2. 전공의 일치도

: 신청자의 전공과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 일치도를 판단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 전공 일치 : 20점
- ◆ 유사 전공 : 15점
- ◆ 학위취득 예정 : 10점
- ◆ 강의 가능 : 5점
- ◆ 전공 불일치하며, 강의도 불가능 : 0점

### 3. 강의평가 결과

: 강의평가 결과는 신청자의 최근 3년간의 강의평가 평점을 산술 평균하여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 매우 우수(4.7 이상) : 20점
- ◆ 우수(4.5 이상 4.7 미만) : 15점
- ◆ 보통(4.3 이상 4.5 미만) : 10점
- ◆ 미흡(4.0 이상 4.3 미만) : 5점
- ◆ 매우 미흡(4.0 미만) : 0점

### 4. 교원업적평가 결과

: 교원업적평가 결과는 최근 3년간의 업적평가 결과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정한다.

- ◆ 매우 우수(상위 10% 이상) : 10점
- ◆ 우수(상위 11 ~ 30%) : 8점
- ◆ 보통(상위 31 ~ 50%) : 6점
- ◆ 미흡(상위 51 ~ 70%) : 4점
- ◆ 매우 미흡(70% 미만) : 0점

### 5. 종합평가

: 기본 점수 20점을 부여하고 신청자의 재직기간 중 경고 이상의 징계처분, 희망학과에 대한 기여도 및 학위취득 이행계획 등 소속변경에 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정한다.  
(경고 이상의 징계 1건당 5점 감점)